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장 이성민[6574] / 보험팀장 백영기[6581] / 팀원 박수연[6587]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3989호

시행일자 2021. 02. 15.

수 신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회장

제 목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1호(2021. 2. 9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2호(2021. 2. 9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4호(2021. 2. 9.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, 이를 안내드립니다.

- 다음 -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1호]

가. 주요개정사항 : [산정지침] 중 '오-3 의료중도'의 '주'항 개정 및 (별표) 환자평가표 변경
*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급여목록.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'주'항 및 (별표2)환자평가표는 동 개정 내용을 적용한 후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으로 이관

나. 시행일 : 2021. 5. 1.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2호]

가. 주요개정사항 :

- 제2편 산정지침 제8호 변경 및 분류기준 '주'항 삭제 (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으로 이관)
- 제3편 3부 환자평가표 삭제 (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으로 보완·이관)

나. 시행일 : 2021. 5. 1.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4호]

가. 주요개정사항 : 의료법 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내 요양병원 정의 개정

나. 시행일 : 2021. 3. 5.

붙임 : 복지부 개정 고시문 3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